

JBNU- KIST 산학연 융합 학과 예산 지원 지침

1. 인건비

가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

- 본 학과 소속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☞ 지급액 기준

-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단가 최저 기준액은 JBNU- KIST 산학연 융합 학과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.
- 석사과정 월 220만원 이상, 박사·통합과정 월 300만원 이상, 수료과정 월 300만원 이상 지급한다.
(통합과정생 경우, 2년 이내는 석사과정생, 2년 초과는 박사과정생으로 포함)
- 단,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본 학과의 장학금 지급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차별지급 할 수 있다.
- 학기 중 대학원생이 취업, 휴학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.
- 졸업 및 석사수료의 경우 해당 월(2월 또는 8월)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에 전념했다는 학과장의 확인이 있다면 그 달 말까지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여 연구장학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.
- 박사수료의 경우 수료일을 기준으로 박사수료생으로 인정되므로 수료일 이전에는 박사과정 기준 연구장학금을, 수료일 이후(수료일 포함)에는 수료과정 기준 연구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.
- 해외에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전념했다는 학과장의 확인이 있다면 입국 후 해당 기간의 연구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불가피한 상황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 외화송금의 방법으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14일(주말 포함) 이내의 휴가를 받은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장학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14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, 해당 월의 연구장학금은 14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)

2. 국제화경비

가. 해외석학초빙

- 본 사업 참여 해외석학의 체류 경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,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☞ 체류기간
 - 체류기간은 사업 신청서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체류기간 내 working day 기준 초빙경비 지급
- ☞ 초빙경비
 - 항공료 등 여비 및 체재비 : 대학 자체 규정(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른 금액 지급
 -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
나. 장기연수

- 해외석학의 소속기관에 본 학과 대학원생들의 장기연수를 지원하는 비용으로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☞ 지원 범위
 - 항공료 : 실비
 - 체재비 : 파견기간 30일 초과 시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지원 (30일 초과 해외 연구생에 대해서는 파견기간동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)
 -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- ☞ 파견
 - 파견기간 : 최소 15일 이상
 - 파견기관 : 학과 해외학자 소속 기관을 원칙으로 함(단,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파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해외학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기관에 파견할 수 있음)

다. 단기연수

- 본 학과 대학원생 및 동반교수의 국제학술대회참가 등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비용으로,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☞ 지원 범위
 - 국제화경비 사용한도 내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지도 교수 및 참가 대학원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며, 학회등록비, 항공료, 체제비로 사용가능 (단, 참여교수 단독으로 예산 사용은 불가하며, 참여대학원생과 동반 시 참여교수의 단기연수 예산 사용 가능)
 - 단기 파견일 경우 기간은 연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함